

【 12 】 양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5. 10

제출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군이 관掌하는 사무중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주민의 민원편의 도모와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 소관 실과소가 불분명하게 분류되어 있는 현행 위임사무명을 양주군실과규칙에 의한 소관 실과소별로 위임사무를 분류하여 행정의 편의 제공
- 위임 근거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된 사무에 대한 조문정리를 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유통관련업자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취소와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문화공보실소관 안 제2호 내지 제5호)
- 나. 지방세 건당 50,000원 미만 결손처분을 건당 100,000원 미만으로 확대위임(재무과 소관 안 제1호)
- 다. 군세의 고지서 교부, 체납세 징수, 재산세, 농지세 비과세사항 접수처리 및 재산세, 사업소세 과세 대장의 직권등재(재무과소관 안 제3호 내지 제10호)
- 라. 군유 잡종재산허가의 위임사무를 대부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불법시설물 철거변상금 징수로 세분화(재무과소관 안 제11호 내지 제13호)
- 마. 위생접객업 대표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생접객업 중 숙박업에 대한 지위승계 등으로 축소(사회과소관 안 제6호 내지 제9호)

- 바. 의료보호증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 발급, 회수 업무를 읍·면으로 위임(사회
과소관 안 제10호내지 제12호)
- 사. 읍·면장의 신고처리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 그에 따른 지
도점검 및 행정처분(환경보호과소관 안 제4호 내지 제5호)
- 아.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산림과소관 안 제3호)
- 자.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및 연장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법령 위반자 등
에 대한 행정처분(건설과소관 안 제1호내지 제4호)
- 차. 군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승인 및 권리의 양도, 양수허가, 권리의 승계
수리,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건설과소관 안 제7호 내지 제17호)
- 카. 군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및 형질변경허가 등(건설과소관 안 제
18호 내지 제23호)
- 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구조나 교통안전 예방 및 금지행위 단속
등(건설과 소관 안 제24호내지 제30호)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위 임 사 무 명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입기관
문화공보실	1	○ 공연신고	공연법 제14조	음·연장
	2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 다음의 권한 ·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3	·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 제9조	
	4	· 유통관련업자 폐업	동법 제11조	
	5	· 유통관련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동법 제12조	
	6	·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동법 제13조	
내무과	1	○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개·폐업신고	인장업법 제3조제1항	
	2	·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4조	
	3	· 업소 지도감독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4	○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입기관
재 무 과		○ 지방세(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지방세 건당 100,000원미만의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30조의3	읍·면장
	2	•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발급	지방세법 제39조	
	3	• 고지서 교부(송달) 및 독촉장 발부	양주군군세조례제6조	
	4	• 체납(미납)지방세 징수	"	
	5	• 신고납부세목중 읍면 신고사항 접수 처리	"	
	6	• 재산세(도시계획세포함)비과세 사항 접수처리	"	
	7	• 농지세 비과세사항 접수처리	"	
	8	• 사업소세 비과세사항 접수처리	"	
	9	•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과세대장 직권등재	"	
	10	• 사업소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	
		○ 군유 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1	• 대부계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4조	
12	• 군유잡종재산의 불법시설물 철거	동법 제85조		
13	• 변상금 징수	동법 제87조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입기관
사회진흥과	1	○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양주군복지회관운영조례 조례제3조, 제12조, 제13조	읍·면장
	2	○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동조례제6조, 제13조	
	3	○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 및 계약 취소	동조례제7조, 제13조	
사회과	1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매장·화장·개장신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제5조	
	2	• 공설매·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	동법시행규칙제4조	
	3	•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양주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4	• 공설묘지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 및 양주군공설묘지 설치및운영조례제10조	
	5	○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생활보호법제17조 및 제19조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무 명	근거 법 규	수입기관
사회과	6	○ 위생접객업종 이·미용업, 여인숙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영업신고		읍·면장
	7	• 신고사항의 변경	공중위생법 제4조, 동법 제7조	
	8	• 대표자의 지위승계	동법 제8조	
	9	•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동법 제10조	
	10	○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11	○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12	○ 의료보호 중지시 의료보호증 회수	동법시행규칙 제9조	
환경보호과	1	○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중용쓰레기 용기 및 적환장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6조	
	2	• 공중변소 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조 16조	
	3	•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내 투기 행위 단속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입기관
환경보호과	4	○ 읍·면장이 신고처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에관한법률제10조, 제11조, 등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읍·면장
	5	○ 제4호과 관련한 정화조의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동법률제14조및동 법률시행규칙제19조 제20조	
산업과	1	○ 농기계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기계류 사용허가 및 취소	양주군농기계류관리 조례제3조	
	2	• 사용료 부과징수	"	
	3	○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제분업 신고	양주군규모이하제분 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제3조	
	4	•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동조례제4조	
	5	• 제분업의 폐지, 휴업신고	동조례제5조	
	6	• 대장기록관리	동조례제6조	
	7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41조 "별표1"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지역경제과		○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시장사용허가 2 • 사용료 조정 및 징수 3 • 주소의 이동신고 4 • 시장사용 폐지신고 5 • 사용취소 및 정지	양주군시장사용조례제1조 동조례제3조 제1호 동조례제11조 동조례제12조 동조례제13조	읍·면장
산림과		○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입산신고 2 •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허가)반납 과 반출확인용 극언타기 및 생산 확인표 작성 3 •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위한 신고	산림법제98조 동법제9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제98조 동법제100조의2 제 3항및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4.5.6항	
건설과		○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도로점용허가 및 연장허가 2 •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제한, 체납 등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1조 동법제19조 및 제19조 의2.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입기관
건 설 과	3	• 부당이득금의 징수, 손케자 부담금	동법제20조, 제21조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읍·면장
	4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동법제25조, 제26조 제27조	
	5	◦ 도로(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점용허가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	도로법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4조, 제43조, 제44조	
	6	• 점용료 부과 징수	동법시행령제26조의3	
	7	◦ 제5호에 의하여 허가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8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승인	동법제45조	
	9	•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허가	동법시행령제2조	
	10	•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수리 • 회사발기인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동법시행령제3조 동법시행령제4조	
	11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동법시행령제5조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입기관
전 설 과		○ 도로(군도)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법령위반을 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읍·면장
	12	• 허가 취소	동법제74조 제1항	
	13	• 허가효력의 정지	"	
	14	• 허가조건의 변경	"	
	15	• 공사의 중지	"	
	16	• 공작물의 개축	"	
	17	• 건물의 이전명령	"	
		○ 도로(군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18	• 토지 형질변경	동법제50조제4항	
	19	•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를 하는 행위	"	
	20	• 축목의 재식이나 벌채를 한 행위	"	
		○ 도로(군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의 권리		
	21	• 토지형질변경 허가	동법제50조제4항 제1호, 제5항	
	22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건물의 부가증치 허가	동법제50조 제4항 제2호, 제5항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무 명	근거 법 규	수입기관
건설과	23	• 죽목의 재식, 벌채허가 ○ 도로(군도)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	동법제50조 제4항 제3호, 제5항	읍·면장
	24	•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동법제50조 제3항	
	25	• 도로손케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동법제67조 제1항	
	26	•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제78조	
	27	•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 도로(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동법시행규칙제18조	
	28	• 도로를 손케하는 행위	동법제47조	
	29	•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	
	30	•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	
	31	○ 사도의 통행제한 또는 금지를 하거나 사용료 징수 허가	사도법제6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동법시행령제4조	
도시과	1	○ 토지 출입허가	도시계획법제5조	읍·면장
주택과		○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려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이유서

[문화공보행정]

단 위 사 무 명		개 정 이 유
현 행	개 정 안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연신고 (신설)	1. 공연신고 ①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신설) (신설) (신설)	○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의 현지성 확보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편익 도모 5. 유통관련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6.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 무 행 정]

단 위 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1. 소속직원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원내 고용원 임용(입대휴직자에 대한 조정발령 제외)	(삭제)	○ 고용직 공무원은 현재 정·현원이 없으며, 고용직은 기능직으로 대체되어 사문화된 조항임
2.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개폐업 신고 ② 신고사항 변경신고 ③ 업소 지도감독	o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4. (현행과 같음)	

[재무행정]

단위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방세 <u>전당50.000원</u> 미만의 결손처분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2. 군유 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군유 잡종재산 허가	0. 지방세(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u>전당100.000원</u> 미만의 결손처분 2. (현행과 같음) 3. 고지서 교부(송달) 및 독촉장 발부 4. 체납(미납)지방세 징수 5. 신고납부세목증 읍면신고사항 접수 처리 6.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비과세사항 접수처리 7. 농지세 비과세 사항 접수처리 8. 사업소세 비과세 사항 접수처리 9.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과세대장 직권등재 10. 사업소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11. 대부계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체납자에 대하여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금액을 100천원으로 상향조정('93.12. 31개정) ○ 납세자의 민원편익 제공과 세무행정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
0. 군유 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군유 잡종재산에 관한 위임 사무명을 세분화

[재무행정]

단위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신설)	12. 군유 잡종재산의 불법시설물 철거	
(신설)	13. 변상금 징수 (사회진흥과 소관)	
3. 복지회관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	1. (현행과 같음)	
4.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료 징수	2. (현행과 같음)	
5. 복지회관 위탁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탁관리 계약 및 계약취소	3. (현행과 같음)	
6. 부동산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삭제)	○ 지방세법 개정으로 토지등급 제도가 폐지되고 공시지가를 적 용함으로 인하여 부동산 과세표 준액 조사가 불필요

【 보사, 환경보호행정】

단 위 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용쓰레기 용기 및 적화장 유지관리	o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현행과 같음)	
② 공중변소관리	2.(현행과 같음)	
③ 폐기물투기 금지구역내 투기 행위단속	3.(현행과 같음)	
④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	(삭제) (사회과 소관)	o 관리조례의 삭제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수수료징수를 쓰레기 봉투 판매로 대체)
2.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1.(현행과 같음)	
② 공설 매·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 증명	2.(현행과 같음)	
③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3.(현행과 같음)	
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4.(현행과 같음)	

[보사, 환경보호행정]

단 위 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3.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요보호 대상자 조사	5.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 생활보호법에 의한 조문정리
4. 이미용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미용업의 개설·휴업·폐업·재개업 신고	6. 위생점객업종 이·미용업·여인숙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 영업신고 7. 신고사항의 변경 8. 대표자의 지위승계	○ 공중위생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무를 이·미용업과 여인숙업에 한하여 위임토록 개정(현행 처리되고 있는 업무를 명문화)
5.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생점객업 대표자 지위승계신고 ② 위생점객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③ 위생점객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설)	9.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0.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신설)	○ 의료보호증의 재사용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동기간동안에는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불편을 초래,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불편을 해소
	11.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12. 의료보호 중지시 의료보호증 회수	

【 보사, 환경보호행정】

단 위 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신설)	<p>(환경보호과 소관)</p> <p><u>4. 읍·면장이 신고처리하는 건축 에 대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u></p>	<input type="radio"/> 신고대상 건축물과 복합처리 되어야 하는 정화조 설치신고를 위임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 제고 (현재 처리되고 있는 업무의 명문화)
(신설)	<p><u>5. 제4호과 관련한 정화조 지도</u></p> <p><u>점검 및 행정처분</u></p>	

【 산업, 축산, 지역경제, 산림행정】

단 위 사무 명		개정 이유
현행	개정안	
1. 농가, 비농가 증명	(삭제)	○ 관련법(농지개혁법) 폐지 - '96. 1. 1
① 농가 비농가 증명		
2. 농기계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농기계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기계류 사용허가 및 취소	1.(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 부과징수	2.(현행과 같음)	
3. 농가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관련법(농가대여양곡법) 폐지 - '73. 6. 15
① 대여 및 수납	(삭제)	
② 절량농가 실태조사	(삭제)	
4.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제분업의 신고	3.(현행과 같음)	
②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4.(현행과 같음)	
③ 제분업의 폐지, 휴업 신고	5.(현행과 같음)	
④ 대장기록 관리	6.(현행과 같음)	
5. 농지의 전용		
① 농지의 일시전용신고(3,300㎡이하)	(삭제)	○ 관련법(농지개혁법) 폐지
② 농지전용 신고	7.(현행과 같음)	○ 농지법에 의한 신고사항을 종전 규정과 같이 위임(법조항 개정)
③ 관상수의 식재, 재배 신고	(삭제)	○ 관련법(농지개혁법) 폐지

【 산업, 축산, 지역경제, 산림행정 】

단 위 사무 명		개정 이유
현행	개정안	
6. 축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축산물의 위생적 공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처리
① 돼지 양의 자가용 도살 신고	(삭제) (지역경제과 소관)	
7.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① 시장사용허가	2.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 조정 및 징수	3. (현행과 같음)	
③ 주소의 이동신고	4. (현행과 같음)	
④ 시장사용 폐지신고	5. (현행과 같음)	
⑤ 사용 취소 및 정지	(산림과 소관)	
8.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입산허가	1. 입산신고	○ 관련법 개정으로 조문정리 ('94.12.22)
②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입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허가)반납과 반출확인용 극인타기 및 생산 확인표 작성	2.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 ----- -----	○ 관련법에 의한 조문정리
③ 일야의 임목벌채신고 및 치수 무육을 위한 벌채신고	(삭제)	○ 현행 군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조문정리
(신설)	3.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찾기위한 신고	○ 산악단체의 수련활동과 지정된 장소에서의 야영등 입산자가 취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군청 까지 와야하는 불편을 해소

【 건설, 도시행정 】

단 위 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1. 토지출입허가 ① 토지출입허가	1.(현행과 같음) (주택과 소관)	
2. 주택사업용자금 회수	○ 주택사업용자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려	○ 현행 군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단순업무의 위임처리로 업무의 능률 향상
3.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급수공사 승인 ②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 ③ 급수장치 사용개시 및 중지 ④ 급수중지 및 폐전 ⑤ 사용료 부과징수 ⑥ 급수용도 변경 ⑦ 소화전 사용허가 ⑧ 응급급수장치의 설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건설과 소관) ○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전용허가 및 연장허가 2.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제한, 체납 등	○ 상수도 사업소의 신설로 관련 업무의 상수도사업소로 이관 ○ 도로점용허가, 단속 등 제반업무 처리를 도로여건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읍·면장이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신설)		
(신설)		

【 건설. 도시행정 】

단 위 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신설)	3. 부당 이득금의 징수. 손계자 부담금.	편익 도모
(신설)	4.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4. 도로(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점용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 ③ 도로 점용료부과징수	0. 도로(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0. 제5호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현행 위임사무에 대한 세부 사무명을 명시
(신설)	7.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승인	
(신설)	8.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 허가	
(신설)	9. 권리의무의 상속 신고수리	
(신설)	10. 회사 발기인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신고수리	
(신설)	11. 회사의 합병으로인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수리	

【 건설. 도시행정 】

단 위 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신설)	① 도로(군도)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법령위반을 하였을 때에 다음조치를 취하는 권한 12. 허가취소 13. 허가효력의 정지 14. 허가조건의 변경 15. 공사의 중지 16. 공작물의 개축 17. 건물의 이전명령	○ 현행 위임사무에 대한 세부 사무명을 명시
(신설)	④ 접도구역 관리 18. 토지 형질변경 19.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를 하는 행위 20. 죽목의 재식이나 별채를 한 행위	○ 현행 위임사무에 대한 세부 사무명을 명시
(신설)	②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 21. 토지형질변경 허가 22.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건물의 부가증치 허가 23. 죽목의 재식, 별채허가	○ 현행 위임사무에 대한 세부 사무명을 명시

【 건설. 도시행정 】

단 위 사무명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신설)	0 <u>도로(군도)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u> <u>24.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u> <u>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u>	<input type="radio"/> 현행 위임사무에 대한 세부 사무명을 명시
(신설)	<u>25. 도로 손궤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u>	
(신설)	<u>26. 접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u>	
(신설)	<u>27. 접용공사 완료 및 위상회복의 확인</u>	
(신설)	0 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u>28.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u>	<input type="radio"/> 현행 위임사무에 대한 세부 사무명을 명시
(신설)	<u>29.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u> <u>적치하는 행위</u>	
(신설)	<u>30.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u> <u>지장을 끼치는 행위</u>	
5. 사도통행 제한허가에 관한 권한	<u>31. 사도의 통행제한 또는 금지를</u>	<input type="radio"/> 조문정리
① <u>사도통행제한 허가</u>	<u>하거나 사용료 징수 허가</u>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문화공보행정 】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연신고 <u>(신 설)</u>	1. 공연신고 ①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공연법 제14조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2항 동법제9조 동법제11조 동법제12조 동법제13조
	3.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 유통관련업자 폐업 5. 유통관련업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6.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내 무 행 정 】

단 위 사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1. 소속직원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원내 고용원 임용(입대휴직자에 대한 조정발령 제의)	(삭 제)	
2.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개폐업 신고 ② 신고사항 변경신고 ③ 업소 지도감독	①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인장업법제3조1항 및 인장업법시행령제4조, 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3.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4.(현행과 같음)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 재무행정 】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현행	개정안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지방세(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방세 <u>건당 50.000원</u> 미만의 결손 처분	1. 지방세 <u>건당 100.000원</u> 미만의 결손 처분	지방세법 제30조의3
②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발급 <u>(신설)</u>	2. (현행과 같음) <u>3. 고지서 교부(송달) 및 독촉장 발부</u>	지방세법 제39조 양주군군세
<u>(신설)</u>	<u>4. 체납(미납)지방세 징수</u>	조례 제6조
<u>(신설)</u>	<u>5. 신고납부세목중 읍면신고사항 접수 처리</u>	"
<u>(신설)</u>	<u>6.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비과세사항 접수처리</u>	"
<u>(신설)</u>	<u>7. 농지세 비과세 사항 접수처리</u>	"
<u>(신설)</u>	<u>8. 사업소세 비과세 사항 접수처리</u>	"
<u>(신설)</u>	<u>9.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과세대장 직권등재</u>	"
	<u>10. 사업소세 과세대장 직권등재</u>	"
2. 군유 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군유 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u>① 군유 잡종재산 허가</u>	<u>11. 대부계약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u>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제84조

[재무행정]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현행	개정안	
(신설)	<u>12. 군유 잡종재산의 불법시설물 철거</u>	동법제85조
(신설)	<u>13. 변상금 징수</u>	동법제87조
	(사회진흥과 소관)	
3. 복지회관 사용허가	1. (현행과 같음)	양주군복지회관운용조례 제3조, 제12조, 제13조
①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		
4.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현행과 같음)	동조례제6조, 제13조
① 사용료 징수		
5. 복지회관 위탁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현행과 같음)	동조례제7조 및 제13조
① 위탁관리 계약 및 계약취소		
<u>6. 부동산에 대한 다음의 권한</u>	(삭제)	
①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 보사, 환경보호행정】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용쓰레기 용기 및 적환장 유지관리	0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제16조
② 공중변소관리	2.(현행과 같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폐기물투기 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	3.(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제7조
④ <u>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u>	(삭 제)	
2.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사회과 소관) 1.(현행과 같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공설 매·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 증명	2.(현행과 같음)	동법시행규칙 제4조
③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3.(현행과 같음)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4.(현행과 같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공설 묘지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

【 보사, 환경보호행정】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3.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u>요보호 대상자 조사</u>	5.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
4. 이미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u>이미용업의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u>	9. 위생접객업종 이·미용업, 여인숙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6. 영업신고	공중위생법 제4조
5.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u>위생접객업 대표자 지위승계신고</u> ② <u>위생접객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u> ③ <u>위생접객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u> (신 설)	7. 신고사항의 변경 8. 대표자 지위승계 9.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10. 의료보호증에 연도별재사용 확인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0조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등법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
(신 설)	11.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
(신 설)	12. 의료보호 중지시 의료보호증 회수	동법 시행 규칙 제9조
(신 설)	(환경보호과 소관) 4. 읍·면장이 신고처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보사,환경보호행정】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신설)	5. 제4호과 관련한 정화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동법률제14조및동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20조

【 산업, 축산, 지역경제, 산림행정】

단 위 사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u>1. 농가, 비농가 증명</u>	(삭제)	
① 농가, 비농가 증명		
2. 농기계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농기계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기계류 사용허가 및 취소	1.(현행과 같음)	양주군농기계류관리조례 제3조,
② 사용료 부과징수	2.(현행과 같음)	"
<u>3. 농가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u>		
① 대여 및 수납	(삭제)	
② 결량농가 실태조사	(삭제)	
4.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제분업의 신고	3.(현행과 같음)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 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제3조
②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4.(현행과 같음)	동법제4조
③ 제분업의 폐지, 휴업 신고	5.(현행과 같음)	동법제5조
④ 대장기록 관리	6.(현행과 같음)	동법제6조
<u>5. 농지의 전용</u>		
① 농지의 일시전용신고(3,300㎡이하)	(삭제)	
② 농지전용 신고	7.(현행과 같음)	농지법제37조 및 농지법 시행령제41조 "별표1"
③ 관상수의 식재, 재배 신고	(삭제)	

【 산업, 축산, 지역경제, 산림행정 】

단 위 사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6. 축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돼지 양의 자가용 도살 신고	(삭제) (지역경제과 소관)	
7.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0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시장사용허가	1. (현행과 같음)	양주군시장사용조례제1조
② 사용료 조정 및 정수	2. (현행과 같음)	동조례제3조제1호
③ 주소의 이동신고	3. (현행과 같음)	동조례제11조
④ 시장사용 폐지신고	4. (현행과 같음)	동조례제12조
⑤ 사용 취소 및 정지	5. (현행과 같음)	동조례제13조
8.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림과 소관)	
① <u>임산허가</u>	1. <u>임산신고</u>	산림법 제98조
② <u>산림이외의</u>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 에 대한 반출확인증(허가)반납과 반출확인용 극인다가 및 생산확인표 작성	2. <u>산림이 아닌</u> 지역에서----- ----- ----- -----	동법제92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제98조
③ <u>임야의</u> 임목별채신고 및 치수무육을 <u>위한</u> 별채신고	(삭제)	
(신설)	3. <u>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u> <u>짓기 위한</u> 신고	동법제100조의2 제3항 및 동시행규칙제103조 제4항, 제5항, 제6항

【 건설. 도시행정 】

단 위 사무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1. 토지출입허가 ① 토지출입허가	1. (현행과 같음) (주택과 소관)	도시계획법 제5조
2. 주택사업용자금 회수 3.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0 주택사업용자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려 ① 급수공사 승인 ②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 ③ 급수장치 사용개시 및 중지 ④ 급수중지 및 폐전 ⑤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⑥ 급수용도 변경 ⑦ 사설 소화전 사용허가 ⑧ 응급급수장치의 설치 (신설)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건설과 소관) 0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허가 및 연장허가 (신설)
(신설)	2.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제한, 체납 등 3. 부당 이득금의 징수, 손제자 부담금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제19조, 동법제19조 의2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동법제20조제21조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건설. 도시행정 】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동법제25조, 제26조 제27조
4. 도로(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점용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 ③ 도로 점용료부과징수	○ 도로(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제5호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도로법제40조 제1항, 동법시행령제24조, 제43조, 제44조 등법시행령제26조의3
(신 설)	7.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승인	동법제45조
(신 설)	8.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 허가	동법시행령제2조,
(신 설)	9. 권리의무의 상속 신고수리	동법시행령제3조
(신 설)	10. 회사 발기인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신고수리	동법시행령제4조
(신 설)	11.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수리	동법시행령제5조

【 전설. 도시행정 】

단 위 사무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① 도로(군도)접용허가를 받은자가 법령 위반을 하였을 때에 다음조치를 취하는 권한	
(신설)	12. 허가취소	동법제74조제1항
(신설)	13. 허가효력의 정지	"
(신설)	14. 허가조건의 변경	"
(신설)	15. 공사의 중지	"
(신설)	16. 공작물의 개축	"
(신설)	17. 건물의 이전명령	"
④ 접도구역 관리	① 도로(군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	
(신설)	18. 토지 형질변경	동법제50조제4항
(신설)	19.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를 하는 행위	
(신설)	20.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를 한 행위	
②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	① 도로(군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의 권리	
(신설)	21. 토지형질변경 허가	동법제50조제4항제1호 제5항
(신설)	22.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건물의 부가증치 허가	동법제50조 제4항제2호 제5항
(신설)	23. 죽목의 재식, 벌채 허가	동법제50조 제4항제3호 제5항

단 위 사무 명		근거법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0 <u>도로(군도)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u> 24. <u>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u>	등법제50조 제3항
(신 설)	25. <u>도로 손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u>	등법제67조 제1항
(신 설)	26. <u>적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집수</u>	등법제78조
(신 설)	27. <u>점용공사 외로 및 위상회복의 확인</u>	등법시행규칙제18조
(신 설)	0 <u>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u> 28. <u>도로를 손해하는 행위</u>	등법제47조
(신 설)	29. <u>도로에 토석·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u> 30. <u>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u>	
5. <u>사드통행 제한허가에 관한 권한</u>	31. <u>사드의 통행제한 또는 금지를 하거나 사용료 징수 허가</u>	사드법제6조, 제7조 및 등법시행령제3조, 제4조
① <u>사드통행제한 허가</u>		